

---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

日時 1991年12月23日(月) 午後3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 따른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取得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13. 서울特別市障礙人用乘用車에대한自動車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的賣買用中古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서울特別市太陽熱煖房住宅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서울特別市戰爭紀念事業會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 서울特別市公共事業遂行時代替取得하는不動產에대한取得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8. 서울特別市多家口住宅에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19. 病院公社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20. 서울特別市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21. 서울特別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22. 서울特別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3. 1992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24. 1992定數物品取得同意案

審査된案件

o 報告事項 ... 4面

1.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面

2.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面
  3.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面
  4.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面
  5. 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6.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7.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8.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 따른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9.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0. 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 
11.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取得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2. 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3. 서울特別市障碍人用乘用車에 대한自動車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4. 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 대한市稅課稅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面

15. 서울特別市太陽熱煖房住宅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6. 서울特別市戰爭紀念事業會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7. 서울特別市公共事業遂行時代替取得하는不動産에 대한取得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6面
18. 서울特別市多家口住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19. 病院公社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20. 서울特別市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 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21. 서울特別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22. 서울特別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23. 1992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24. 1992定數物品取得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15時 17分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定期會 第4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議案擔當官室의 報告事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事項

○金宇瑛; 議案擔當官室에 勤務하는 金宇瑛입니다. 報告드리겠습니다.

1991年 12月 19日 議長으로부터 서울市長이 提出한 1992年 定數物品取得同意案과 서울特別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이 回附되어 왔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7月 8日 우리 서울市 議會가 開院한 이래 그 동안 市政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市民의 代表로서 執行部에 대하여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였으며 監査하는 과정의 不合理的 점에 대하여는 市民便宜 爲主로 是正 및 改善을 要求하였으며, 市民이 낸 稅金이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합리적인 財源配分을 통해 市民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豫算案도 다루어서 豫算案을 確定을 하였습니다.

금일 審査할 案件이 모두 24건이 됩니다. 案件을 한건 한건 上程하여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으신 以後에 質疑와 答辯을 거친 후 議決하는 順序로 반복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24件 모두 財務局 所管이므로 이미 委員님들에게 배부된 油印物에 의해서 案件을 一括 上程,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一括하여 들은 이후 이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친 후 議決할 때에는 案件別로 議決할 생각입니다.

- 
1.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3.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4.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5. 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7.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 따른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9.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 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取得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2. 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3. 서울特別市障碍人用乘用車에 대한自動車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 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 대한市稅課稅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5. 서울特別市太陽熱煖房住宅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 서울特別市戰爭紀念事業會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7. 서울特別市公共事業遂行時代替取得하는不動産에 대한取得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8. 서울特別市多家口住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9. 病院公社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0. 서울特別市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 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1. 서울特別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2. 서울特別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3. 1992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4. 1992定數物品取得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20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부터 議事日程 第24項 1992年 定數物品取得同意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審査할 24件의 案件은 地方稅 關聯法令이 改正되어 이에 따른 內容을 條例에 정하여 동시에 施行되어야 함으로 관련 서울市 市稅減免條例를 制定, 改正, 廢止하는 것과 財産取得, 交換, 賣却, 讓與 등을 內容으로 한 92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과 機構擴大와 業務量 增加에 따른 基本行政 및 事業物品의 新規, 代替取得에 대한 同意案입니다.

그럼 오늘 審査할 條例案 22件과 同意案 2件에 대해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提案說明을 드리기 전에 지난 週에 저희 財務局 豫算을 朴尙東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積極的으로 配慮해 주셔서 잘 通過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上程한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92年度 施行 市稅減免에 관한 條例 制定, 改正, 廢止안에 대해서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市稅減免條例의 制定, 改正, 時限延長, 廢止하는 경우는 地方稅法 第9條에 의거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市議會에 上程된 市稅減免條例 案件은 內務部長官으로부터 市稅減免條例準則이 시달이 됨에 따라서 이 準則은 地方稅法 第9條에 의한 內務部長官의 許可로 같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特別市市稅減免條例 改正, 廢止안을 마련하여 附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92年度 施行 市稅減免條例案의 主要內譯은 委員님들께 이미 配付하여 드린 議案番號 179호에서 198호의 20個 條例案으로써 油印物에서 밝힌바와 같이 制定 1件, 改正 8件, 時限延長 8件, 廢止 3件이 되겠습니다. 市稅減免條例制定, 改正, 廢止에 관한 總 20건을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檢討하신 후 議決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附議案件을 각 案件 番號別로 간략히 要約해서 說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9호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 대한 市稅課稅減免에 관한 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91年 12月 14日字 法律 第4415號에 의하여 公布된 地方稅法중 改正法律에서 第107條第1號 規定이 改正되어 學校法人에 대



한 非課稅 對象을 不動産에 限定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教育 法の 規定에 의한 各級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財團法人 및 개인이 取得하여 私立學校가 학생의 實驗·實習用에 使用하는 教育用 財産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稅의 課稅를 면제하기 위하여 條例를 制定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學校法人 등이 학생의 實驗·實習用에 직접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登錄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를 免除하기로 하고 다만, 取得登記日로부터 1년 이내 正當한 사유 없이 학교 教育用에 직접 使用하지 아니할 경우는 면제된 取得稅 및 登錄稅를 追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課稅免除에 관한 事務는 課稅對象 物件을 管轄하는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處理하고 課稅免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區廳長이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新設되는 學校法人의 實驗, 實習用 財産에 대한 免除條例 制定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180호에서 187호 條例案 8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議案番號 180호 서울特別市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國家有功者 禮遇 등에 관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傷痍軍警의 보철용 차에 대한 對象基準이 地方稅法 改正으로 인하여 자동차 분류가 기통수에서 배기량 基準으로 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國家有功傷痍者의 급수 및 해당번호의 條例 條文을 누구나 理解하기 쉽도록 條文 整理하여 免除 對象을 擴大하

였습니다. 또한 條例 施行期間이 금년 말 滿了되는 것을 3年 延長하여 國家有功者에 대한 免除 혜택을 繼續 附與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國家有功者中 重傷痍者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의 取得稅・登録稅・自動車稅 免除對象을 4기통 이하의 일반 乘用車를 庶民用 車輛으로 보았으나, '92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自動車稅附過基準上, 2000cc이하로 하여 重傷痍者의 활동용 특수기구탑승에 맞는 중형차까지 自動車의 基準을 擴大變更 調整했습니다.

課稅免除對象이 되는 상이자에 대한 급수 및 해당번호를 條例 條文에 직접 規定하던 것을 削除하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免除對象을 보철용 자동차로 運轉이 가능한 하지 계통 傷痍者를 支援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傷痍 程度 상위급수인 상지 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를 補完하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國家有功者 禮遇 등에 관한 法律 施行令 別표 3에서. 인용한 표를 만들어 添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年 12月 31日 施行期間이 滿了되는 條例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였습니다.

다음 議案番號 181호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대하여 說明 올리겠습니다. 都心再開發法の 規定에 의하여 再開發事業施行으로 建築하는 再開發區域내의 모든 建築物에 대하여 取得稅・登録稅를 課稅免除하던 것을 都心再開發 등 非住宅은 막대한 開發利益이 發生되는 점을 감안하여 住宅改良事業에 한하여 課稅하지 아니하기로 改正하고 금년 말로 滿了되는 條例의 施行期間을 3年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再開發區域의 課稅免除 對象을 再開發區域內 모든 建築物에 課稅免除하던 것을 住宅開發 再開發 事業에 限定하여 非住宅은 免除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條例 기술 內容의 重複된 부분을 調整하고 1991年 12月 31日 施行 期間이 滿了되는 條例의 運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182號 서울特別市都市가스사업자에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事業法 第3條에 의한 都市가스 事業者가 都市가스 事業에 직접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取得稅 및 登錄稅를 50% 輕減해 주는 條例의 內容중 용어가 일치되지 않는 部分을 條文 정리하고 條例의 施行期間이 금년에 滿了되는 것을 3年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는 取得稅 및 登錄稅 50%輕減 對象임에도 "課稅免除"로 표기된 조문을 "不均一課稅"로 "免除申請"을 "輕減申請"으로 용어를 재조정 정리했습니다. 區廳長이 輕減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輕減申請이 없는 경우라도 職權으로 輕減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行政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1991年 12月 31日로 施行 滿了되는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는 內容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83호 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規模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不動產을 設置하는 경우 取得稅 · 登錄稅 및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를 5年間 免除하여 주고 있는 本 條例의 內容을 주차전용 建築物이 없는 노천 주차장에 대한 課稅 免除 算定基準을 명확히 정하고 條例의 施行期間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것을 3年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

主要骨子으로써 주차용 建築物없이 주차용 토지에 설치된 노천 주차장에 대하여 都市計劃稅 免除基準이 되는 1年間 駐車場 수입금액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7%이상이어야 하는바, 收入 金額 算定基準日字를 전년도 6月 1일부터 該當年度 5月 31일까지로 정하고 事業開始期間이 1年 미만인 경우 1日平均金額에 365日을 곱한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하고 適用時限 1994年 12月 31일까지 3年間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84號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60㎡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목적으로 建築하는 建築主에게 取得稅, 登錄稅를 課稅 免除하고 최초 분양 취득자에게 取得稅, 登錄稅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것을 40㎡이하 영세주택 취득자는 取得稅, 登錄稅를 100% 課稅免除해 주고, 40㎡ 以上 60㎡ 以下の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취득자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50%경감해 주는 것을 재조정하고 條例의 施行期間이 금년 말에 滿了되는 것을 3年間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으로써 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은 5世帶 以上입니다. 60㎡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建築主로부터 최초 分讓取得者에게 取得稅 및 登錄稅를 50%경감해 주던 것을 40㎡이하 住宅은 과세 면제해 주기로 하고 分讓 받은 주택이 1가구 2住宅에 該當되는 경우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免除 또는 경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1991年 12月 31日 施行期間이 滿了되는 條例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는 內容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85호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대한市稅課稅

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 올리겠습니다. 地方公企業法の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및 公團에 대하여 서울特別市가 設立한 법인으로서 公共事業 修行에 필요한 資金支援 등을 해주면서 地方稅를 課稅하게 됨은 事務 번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課稅免除 條例에 의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및 消防共同施設稅 등 地方稅를 감면하고 있는 바 住民稅 課稅免除를 추가하고 施行期間이 없는 것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時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서 地方公社・公團 즉, 地下鐵公社, 都市開發公社,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施設管理公團에 대한 住民稅 課稅免除를 추가하고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新設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86號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 따른 市稅 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現行 條例 內容에서 다른 條例名을 인용한 條文이 있어 그 內容이 市條例에서 自治區條例로 移管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 정리를 하고 施行期間이 없던 것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時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서 조문에 인용된 서울特別市無許可建物整備事業 補償金支給條例를 自治區無許可建物整備에 대한 補償金支給條例로 移管됨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附則에 施行期間이 없던 것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適用時限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87호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 대한 施設 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 올리겠습니다. 모든 國民에게 평생을 통한 社會教育 機會를 附與하기 위한 社會教育法の 規定에 따라 등록된 社會教育轉用施設에 대하

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를 免除하는 內容의 條例로써 '91年 11月 30日字 法律 제4410號로 博物館法이 폐지되고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이 制定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條例의 內容을 改正하고 施行期間이 今年 말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써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の 適用을 받는 미술관을 課稅免除 對象에 追加하고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時限 延長되는 條例改正案 議案番號 188에서 195까지 市稅減免條例 8件은 時限이 '91年 12月 31日로 滿了되어 地方稅法の 特殊法人 등 課稅免除 規定 適用 時限基準 3年과 일치시켜 '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改正되는 內容은 각 條例의 附則에서 施行期間이 12月 31日까지인 것을 適用時限 '94年 12月 31日까지로 變更 改正하는 內容입니다.

따라서 議案番號 188號 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 올리겠습니다. 不動產 登記時 提出되는 檢認契約書 金額을 適用하여 取得稅 및 登錄稅의 課稅標準으로 과세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40% 경감해 주고 있는 內容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 滿了되는 것을 3年 延長을 하여 實法來價申告에 대한 正직한 納稅者에게 稅制 支援을 繼續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써는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3年 延長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89號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및그遺族의住宅取得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國家有功者 禮遇등에 관한 法律 規定에

의하여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의 연금 대부금으로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土地 및 建築物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를 면제하여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을 支援하는 內容으로 된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 滿了됨에 따라 그 適用 時限을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서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0號 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事業의 일환으로 취락구조 改善事業으로 개량된 建築物과 그 부속 土地에 대하여 取得稅 및 登錄稅를 免除하고 都市計劃稅 및 消防共同施設稅를 5年間 免除하는 內容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 期間이 1991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時限을 3年 延長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1號 서울特別市障人用乘用車에대한自動車稅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障人活動支援을 위하여 障人 중 지체부자유자가 직접 運營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自動車稅를 課稅 免除對象으로 하는 內容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 滿了됨에 따라 運用時限을 3年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議案番號 192號 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 中古自動車에 대한 定理課稅免除및不拘 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하여 取得稅를 免除하고 登錄稅 1% 경감 적용하는 內容으로 된 本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31日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間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3號 서울特別市太陽熱煖房住宅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 올리겠습니다. 政府의 에너지 節約對策을 支援하기 위하여 주택의 난방면적 1/3이상의 집열관을 지붕에 설치하여 태양열로 난방하는 200m<sup>2</sup> 이하 주택에 取得稅, 登錄稅를 면제하는 內容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에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間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4號 서울特別市戰爭紀念事業會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案에 대하여 說明 드리겠습니다. 전쟁교훈을 통한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事業을 目的으로 設置된 戰爭紀念事業會가 직접 사용하는 土地, 建築物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 등을 課稅免除 對象으로 하는 內容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字로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間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5號 서울特別市公共事業遂行時代替取得하는不動產에대한取得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說明 올리겠습니다.

市民아파트 정리사업 등 公共事業 遂行에 따라 不動產이 매수 收用되어 보상을 받고 대체 취득할 不動產 매입권을 인정 받은 자가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課稅免除하는 內容으로 된 것으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까지 滿了됨에 따라 適用時限을 3年間 延長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6號 서울特別市多家口住宅에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廢止條例案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建築物 延面積 660m<sup>2</sup>이하인 住宅으로써 세대당 區劃이 60m<sup>2</sup>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하여 取得稅를



세율 15%에서 2%로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 滿了될 예정에 있고, 政府가 條例內容의 景감대상이 되는 것은 地方稅法施行令에 이를 반영하여 계속 惠澤을 부여할 것을 推進中에 있어 本 條例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써는 시행일 1992年 1月 1日 로 해서 條例의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議案番號 197號 病院公社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올리겠습니다. 地方公企業法 第49條 및 醫療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病院公社 강남병원에 住民稅를 免除하는 本 條例에 대한 내용을 政府가 地方稅法施行令에 반영하여 계속 稅制支援 惠澤을 부여할 것을 추진 중에 있어 本 조례를 92年 1月 1日字로 廢止하려는 內容입니다.

다음 議案番號 198號 서울特別市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鐵道建設事業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土地를 확정 분할할 경우 土地所有者가 登記하는 분할등기에 대하여 登錄稅를 免除하는 내용으로 된 本 條例의 施行期間이 1991年 12月 31日 滿了될 예정이고, 政府가 條例內容의 免除對象이 되는 것은 地方稅法 施行令에 이를 반영하여 계속 惠澤을 附與할 것을 推進 中에 있어 本 條例를 廢止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에 施行日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1991年 1月 1日이 아니라 1992年 1月 1日字로 廢止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市稅減免條例 制定 1件, 改正 8件, 時限延長 8件, 廢止 3件. 總 20件에 대한 說明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149號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0年 11月 5日 條例 第684號로 制定된 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案의 制定根據인 道路法 第66條가 1989年 12月 30日부로 制定된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削除되고 1991年 11月 16일부로 시달된 內務部長官의 指針으로 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를 폐지토록 하였기에 同 條例를 폐지코자 하여 提案을 했습니다. 道路法 第66條를 보면 「관리청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2項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附則 第3條가 다른 法律의 改正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6項에 보면 「도로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를 削除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廢止條例案을 提案을 했습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227號 서울特別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地方稅法中改正法律이 1991年 12月 14日字 法律 第4415號로 改正 公布됨에 따라 既存 條例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된 내용은 削除 整備하되 條例의 전문을 改正하려는 內容입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地方稅法上 條例로 規定하도록 한 사항만을 條例에 정하고 地方稅法승에 規定된 내용과 중복된 종전 規定의 내용은 모두 削除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정세율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법정표분세율로 했습니다. 또한 都市計劃稅率과 내년부터 시행될 自動車稅率

도 50% 가산 調整할 수 있으나 법정표준세율로 했습니다. 屠畜稅率 1%세율로써 10%범위내 감산할 수 있으나 종전과 같이 法定制限稅率 1%로 했습니다. 다음 외국 航路에만 就航하는 事業用 항공기는 1993년부터 課稅되나 50%를 超過하여 條例에 減免比率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法定最小 減免比率인 5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申告規定은 稅目마다 따로 規定되어 있으나 取得稅, 財産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 등 聯關되는 申告는 동일한 선행 申告로 같음하도록 납세자 便宜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92년부터 처음 實施되는 地域開發稅에 관한 내용을 新設하였고, 그 밖에는 전문 개정함에 따른 종전 規定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條例 構成 內容은 第1章 總則에서 條例에 정하는 사항과 용어, 稅目, 기타 부과징수 事務에 관한 規定을 정하였으며 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第2章 보통세 8개 稅目에 관하여 法令의 規定이 기술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각 稅目別로 條例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 標準稅率의 결정 신고사항 등을 規定했습니다. 그리고 第3章 目的稅 3개 稅目에 관하여 보통세와 동일한 내용들을 規定하였으며 우리市에 現在는 課稅對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地域開發稅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정하여 장차 課稅對象 發生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地方稅 關係 改正, 制定 廢止案에 대한 說明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208號 '92年度市有財産管理 計劃同意案에 대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92年度財産管理計劃에 計上된 재산은 총 14件으로 土地가 70필지에 4만 7,631.2㎡이며 건물 이 17棟에 4,479㎡로써 취득이 1件, 매각이 9건, 양여가 2

건, 교환취득 및 처분이 각 1건입니다. 첫째로, 取得對象이 財産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면 경복궁 주변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生活不便에 따른 고충의 해결을 요구하는 集團 民願事項을 解消하고, 이 지역 일대의 녹지조성과 駐車場施設을 위한 整備事業 計劃을 '90年 8月 29日 樹立하여 '91년에 建物 14棟과 부속토지 2,038㎡를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 15棟과 부속토지 3,074㎡를 '92年度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며,

둘째로, 交換對象 財産으로는 內務部 이북5도위원회 廳舍를 新築을 위한 토지인 鐘路區舊基洞 所在 市有地 6필지 8,524㎡를 內務部 이북5도위원회에 제공하고, 이북5도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委員會에 제공하고 代替財産으로 市廳과 가까운 獎忠洞에 위치한 내무부 이북5도위원회 청사, 자유센타 옆에 있는 것입니다. 1,205.5㎡와 부속토지 6,052.9㎡를 우리市에서 인수하여 公用의 廳舍로 사용키 위하여 상호 交換할 豫定입니다.

셋째로, 賣却財産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當初부터 賣却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중 미 매각된 재산으로써 外務部에 外交官 公館數地로 7필지 1만 700㎡와 서울시교육청에 광남중학교 용지로 1필지 1만 1,550㎡는 賣却할 豫定이고, 銅雀區 및 冠岳區民의 상권을 形成하기 위한 보라매公園옆 상업용지 4,043㎡와 '91年度 공매시 유찰된 재산 2건 845.5㎡는 일반경쟁 入札로 賣却할 豫定이고, 또한 財産의 位置, 形態, 用途 등으로 보아 保存의 必要性이 없는 사유건물 점유 재산 2필지 121.7㎡와 영천지역 住宅改良地區 내의 用途 廢止된 폐도로 등 12필지 1,133.1㎡를 都市計劃事業 旅行者인 영천지역 住宅改良再開發組合에 그리고 송파구에 어린이복지관 數地로 1필지 414㎡를 松坡區廳에 매각할 豫定입니다.

넷째로, 양여대상 재산의 基礎自治團體의 老人亭建立 부지를 提供하기 위하여 城東區廳에 205m<sup>2</sup> 江南區廳에 335m<sup>2</sup>을 무상 양여할 豫定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提出한 '92年度 管理計劃은 '92年度 歲入·歲出豫算案에 計上된 豫算에 맞도록 수립된 것으로써 關係法規를 엄격하게 適用하여 財産管理에 徹底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226號 '92年度定數物品取得同意案에 대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第95條 및 同法施行令 第113條 2項의 規定에 의거 정수관리 對象인 물품의 取得, 處分에 대하여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市 本廳, 4개 事業本部, 47個 事業所, 警察廳, 消防本部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본행정 물품과 사업용 물품의 신규 취득 및 老朽物品의 對替 취득에 관한 사항을 議會의 승인을 얻어 '92年度 豫算의 범위 내에서 購買하고자 합니다. 정수관리 對象 물품은 內務部長官이 그 對象品目を 선정하고, 所要基準은 각급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결정합니다. 對象物品은 기관 또는 室·課單位에서 사용하는 物品과 事業部署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고가인 重要 物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관리 대상 品目은 總 278個 品目으로 基本定數는 타자기, 복사기 등 業務遂行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 65個 품목이 있고, 사업정수는 중장비 시험 검사기기 및 의료장비 등 특정 사업 目的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써 213개 품목이 있습니다. 물품의 정수책정 목적은 事業遂行이나 業務處理에 필요한 主要物品의 運用數量을 미리 策定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事業 遂行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物資, 豫算浪費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며, 所要基準은 각 部署에서 業務量이나 職員

數, 業務內容 등을 감안하여 정수를 策定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203개 품목에 2,768개로 164億 5,310만원에 該當됩니다. 新規取得은 177개 품목에 2,099個 115億 759萬원이고 代替 取得은 70個 품목에 669個 49億 4,551萬원입니다. 기관별로 報告드리면 市 本廳은 39個 품목에 610개 15億 2,340萬원으로 本廳은 70개 課와 市議會事務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事業本部는 41개 품목에 298個 20億 5,569萬원으로써 上水道事業本部, 綜合建設本部, 地下鐵建設本部, 交通放送水부가 여기에 該當이 됩니다. 事業所는 조금 아까 報告드린 대로 47個 사업소로써 122個 품목에 827個 49億 7,109萬원이 該當되고, 消防本部 40個 품목 915개로써 65億 972萬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消防本부와 14개 消防署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警察廳은 19개 품목으로써 118개로 132億 9,319만원이 되겠습니다. 警察廳은 주로 交通企劃課, 交通安全課, 交通管理課, 면허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物品取得 豫算은 本廳 各 室·課 및 警察廳, 消防本部, 各 事業本部, 事業所 豫算에 각각 別도 編成되었습니다.

92年度 서울市 豫算案이 確定되어 議會에 提出된 豫算案에 計上된 各 機關 및 各 部署의 정수물품 購入費를 합하여서 總괄 승인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機關別 主要品目は 別添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上程된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相東;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 2項에서 17項까지인 각종 減免에 관한 條例는 적용시한을 94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고 母法에 따른 條文을 정비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중 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 中古自勤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勤事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 그리고 議事日程 16項인 서울特別市戰爭紀念事業會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잠깐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新마을事業支援을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는 타 市道와는 달리 서울特別市の 경우에는 새마을事業을 施行하고 있지 않으므로 條例改正의 별도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추후에 適用時限을 檢討할 경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中古自勤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事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向後에 中古自勤車賣買業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는 減免 및 輕減 혜택을 縮小 調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戰爭紀念事業會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戰爭紀念事業會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法律이 정한 節次에 따라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 중에서 보유세인 향후 取得稅, 登錄稅는 減免 혜택을 縮小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1項인 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

制定案은 地方稅의 課稅 免除 및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는 規定과 提案書 第4項에서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며, 條例案의 내용으로 볼 때 教育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經營하는 學校法人 등이 實驗, 實習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중의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 대하여 과세 免除하기로 한 것으로써 教育法 第81條, 學校의 種類·教育法施行令 第54條 學校法人에 관한 規定을 檢討하고, 91년 12月 14日字 法律 第4415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第107條第1號 改正 內容이 不動産만 課稅 免除하기로 함에 따라 實驗 實習用 재산에도 課稅 免除의 必要性이 있다고 봄으로 이의 條例 改正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多家口住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多家口住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廢止條例 사유는 건축물 延面積 660m<sup>2</sup> 이하인 주택으로써 世帶當 60m<sup>2</sup>이하로 구획된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한 取得稅 경감 혜택을 地方稅法 施行令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條例 廢止 여하에 불구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계속적인 稅制惠澤이 부여되므로 條例 廢止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서울시議會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病院公社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病院公社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 사유는 地方公企業法 第49條 및 의료법 第30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江南病院에 住民稅 免除 혜택을 地方稅法 施



行令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條例 廢止 여하에 불구하고 江南病院에 계속적인 稅制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條例整備하는 차원에서 폐지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 따른 登錄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 廢止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 따른 登錄稅課稅免除에 관한 廢止條例 事由는 鐵道建設事業으로 인하여 鐵道 建設數地로 편입된 토지를 確定 분할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 등기에 대하여 登錄稅 免除惠澤을 地方稅法施行令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條例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서울特別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中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道路受益者 負擔金 徵收 條例 廢止 事由는 道路受益者負擔金を 徵收할 수 있는 근거 法規인 道路法 第66條가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거 削除되었기에 廢止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條例廢止 여하에 불구하고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과 土地超過利得稅法에 의해서, 그리고 토지과표 조정을 통하여 사실상 道路受益者負擔金を 徵收하고 있고,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 근거法規인 道路法 第66條가 廢止되었으므로 條例 정비 차원에서 廢止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特別市市稅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市稅條例改正案 主要 內容을 보면 市稅賦課 徵收에 필요한 시행시책을 정한 것으로써 改正前 동일 내용을 다시 조문 배열하고, 地方稅 法令과의 重複 內容을 改正案에서 削除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번에 改正된 地方稅法에 의하면 條例上으로 자동차세율을 50%까지 가산 조정, 그리고 주민세율중 법인 균등할이 변경된 것을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條例 改正案의 內容을 보면 종전과 다름없이 가감 세율 없이 標準稅率로 정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市民의 추가세 부담이 없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92年度부터 新設되는 地域開發稅는 서울시의 경우 課稅對象이 없어 예를 들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이 없으므로 制定 실익은 없다고 보나 향후 과세대상 발생을 대비하여 條例內容에 規定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며 마권세의 경우 지난해 연간 565億원 收入中 서울시內에서 마권이 판매된 비율이 62%라고 볼 때 350億원이 販賣場所인 서울시 收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地方稅法 改正時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때를 대비해 계속 條例에서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規定해 놓은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음 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市有地 財産管理 計劃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所管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市長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을 위하여 연초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管理·處分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市有財産 管理計劃同意案은 取得 2件, 處分 12件으로 그 內容을 살펴보면 매입할 財産은 토지 33필지 1,120평과 그 지상가옥 15棟 919坪으로 경복궁 주변 일대 住民의 生活不便解消 및 그 地域의 綠地造成 및 駐車施設을 確保하기 위하여 買入하는 것이며, 交換對象 財産은 內務部와 서울特別市間 相互 필요한 公用의 廳舍敷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所有 舊基洞 所在 토지 6필지 2,578坪을 內務部와 이북5도위원회 廳舍

敷地로 提供하고 대신 內務部 所有 장충所在 토지 2필지 1,830坪 및 그 地上建物 1棟 364평을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01條1項 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며, 매각할 재산은 토지 27필지 8,715坪 建物 1동 70坪을 수의 계약이 6件, 一般競争入札이 3건으로 수의 계약 대상은 外務부에 공용의 廳舍敷地로 토지 7필지 3,236坪, 松坡區에 어린이복지관 敷地로 토지 1필지 125坪과 그 지상건물 1棟 70坪, 서울特別市 教育廳에 광남중학교 敷地로 토지 1필지 3,493坪, 都市計劃事業 施行者로 승인된 영천구역 住宅改良再開發組合에 도로부지 12필지 342坪, 그리고 81年 4月 30日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2필지 36평으로, 이상은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5條第2項 각호 規定에 의거 國家·地方自治團體·都市計劃事業 施行者 및 占有者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기타 매각재산 4필지 1,479坪은 一般競争入札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城東區廳 및 江南區廳에 老人亭 부지를 讓與하려는 토지 2필지 163坪에 대하여는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02條第1項第1號에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안에 있는 공동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할 때에는 讓與할 수 있는 規定이 있기는 하나, 지난 번 91年 管理計劃 變更同意案 審議時에도 自治區와 서울特別市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가급적 무상양여를 지양하기로 논의된 바도 있고, 금번 92年 管理計劃 賣却對象 내역에도 松坡區廳에는 어린이 복지관 敷地로 유상매각하겠다고 동의요청 되어 있고, 타 自治區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城東區廳과 江南區廳에 노인정 敷地로써의 財産讓與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淨水物品取得同意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

략하게 검토의견만 報告드리겠습니다. 92年度 서울市 豫算案이 確定되어 지난 11月 21일 議會에 提出된 후 豫算案에 計上된 각 機關 및 部署의 정수물품 購入費를 總括 承認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각 部署에서 정수물품 購入費 예산 要求時 취득 事由를 명시하였고, 豫算專擔部署에서 檢討후 필요한 물품에 한해 조정되었으며, 議會에 上程된 豫算案은 각 常任委員會別로 妥當性を 충분히 檢討하여 審議하였기 때문에 예정된 豫算의 범위 내에서 取得하는 것은 別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案件들이 條例 施行期間이 지나서 施行期間을 延長하는 그러한 내용의 條例案들이 많습니다. 委員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內容에대한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條例案에 대한 것, 연장에 대한 것을 전체 우리가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確定을 해 줘야 될 內容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質疑를 통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議事進行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서 一問一答형식으로 進行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체 條例 改·廢案이 많기 때문에 財務局長께서 앉아서 答辯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上程된 條例案에 대한 것을 委員님들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崔明鎭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방금 朴尙東 財經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게 檢討하고 또 서울市民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무 부담과 의무폐지가 될 수 있는 條例案들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많은 條例案들을 審議한다는 것이 심도 있는

審議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新設 條例가 하나고, 改正 條例가 17個, 廢止 條例案이 4件, 그리고 92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92年 定數物品取得同意案, 局長께서는 이렇게 많은 改正, 廢止, 新設條例案 물론 各各 사유는 있었겠지만 일찍 市議會에 提出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을 맞아 提出하셨습니까? 그것부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아까도 報告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地方稅法의 規定에 따라서 條例改正案을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許可받는 過程 또.....

○崔明鎭 委員; 許可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減免條例 準則이 內務部에서는 날짜가 11月 21日字입니다.

○崔明鎭 委員; 11月 21日字로요?

○財務局長 裴文煥; 네, 21日字

○崔明鎭 委員; 다음에는 이런 條例案을 한꺼번에 議會에 提出해서 서울市民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 條例案이 常任委員會에서나 本會議에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날림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계획을 세워서 提出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裴文煥; 네, 알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定數物品取得同意案을 언제 市議會에 提出했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12月 18日입니다.

○崔明鎭 委員; 提出年月日이 12月 19日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247個 品目 2,768個, 164億 5,310萬 6,000원, 品目도 많고, 갯수도 많고 金額으로도 이렇게 164億원이 되는 定數物品取得同意案도 사전에 충분한 時間을 두고 提出할 수 있

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提出했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明鎭 委員; 무슨 事由입니까?

○財務員長 裴文煥; 이것이 아까도 報告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 傘下機關에 區廳만 빼놓고 豫算이 각 所管別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豫算審議 過程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게 좀 늦어졌습니다.

○崔明鎭 委員; 모든 事業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事由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局長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많은 條例案과 定數物品取得同意案 그리고 市長財産管理計劃同意案 이것을 한꺼번에 제출해서 이 常任案에서 심도 있는 審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벌써 提案說明하고 專門委員 檢討報告까지 하는 그 시간이 약 한 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提案說明과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대충 대충 중요한 항목만 골라서 했는데도 한 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委員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檢討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솔직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委員님들 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審議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의도적으로 안 하셨더라도 結果적으로는 本委員會에 한꺼번에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尙正 案件을 提出해서 심도 있는 審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결국 責任은 우리 委員會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서울市民들이 져야 됩니다. 狀況이 이런데 當 委員會의 우리 朴尙東 財經委員長님을 포함해서 當 委員會委員들에게 이 자

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들어가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指  
摘이 되었습시다만 松坡區 어린이복지관 敷地는 유상으로 매  
각을 하고 城東區廳 노인정 부지, 江南區廳 老人亭 부지는 무  
상 양여로 管理計劃同意案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事  
由가 있어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올라왔습니까? 사유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 결정이 議會 생기기 전에 市長님 方針이 되어서 저희  
한테 送付가 되어 왔기 때문에 上程을 했습니다. 委員님들께  
서 檢討를 해 주셔서 處理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  
니다.

○崔明鎭 委員; 市長의 事前 方針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도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妥當性和 說得力과 合理的이어야지, 어디 區廳  
에는 讓與가 無償이고 어디 區廳에는 有償으로 賣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市民 들이 저희 委員會나 委員들에게 質疑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는 城東區廳, 江南區廳  
은 예뻐서 무상 양여이고 송과구는 미운 털 박혀서 유상으로  
매각했다. 액수는 高下간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崔明鎭 委員; 이 문제는 當 委員會 委員들하고 또 相議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買入案 중에서 경복궁 주변 일대 民願地域 整備, 지금 현재 이미 買入이 된 土地나 建物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裴文煥; 네, 아까 91年度에 買入한 件數를 말씀드렸는데.....

○崔明鎭 委員; 그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우선 91年 豫算 가지고 건물 14평과 부속토지 616.7坪은 買入이 되어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그것이 14동이고 그것이 거기에 따른 부속 토지니까 여러 件이니까 같은 날 된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崔明鎭 委員; 件 別로 대충 말씀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裴文煥; 崔委員님!

○崔明鎭 委員; 네.

○財務局長 裴文煥; 그건 날짜별로 분명히 있는데 鍾路區廳에서 執行을 하였기 때문에 그 필지별 날짜는 바로 알아서.....

○崔明鎭 委員; 여기 지금 提案說明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번 豫算 審議할 때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市議會 開院 이후에 買入한 문제가.....

○財務局長 裴文煥; 豫算審議 할 때요?

○崔明鎭 委員; 서울시 議會 開院한 이후로는 買入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이 경복궁 주변 일대.....

○財務局長 裴文煥; 네, 그 날짜를 챙겨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崔明鎭 委員; 지금 時間이 많이 걸리면 찾은 후에, 날짜를 안 뒤에 答辯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正確하게 찾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네.

○委員長 朴尙東; 자,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秉守 委員; 이왕 崔明鎭 委員께서 指摘을 한 것에 대해서 江南區廳의 老人亭 建立을 위해서 101坪 無償 讓與하는 문제가 公교롭게 제가 江南區 出身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 원래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좀, 이것이 어느 洞, 구체적인 內容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位置까지 다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어느 洞이에요?

○財務局長 裴文煥; 細谷洞 129번지의 12호인데 취락구조 改善 事業地區…….

○李秉守 委員; 말이 江南區지, 이것은 江南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은 議案 182호입니다. 議案 182호가 都市가스業者에 대한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이것이 그러니까 이 資料의 조문 표현이 衡平에 어긋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 정도로 檢討 報告는 그렇게 되어 있고 財務局에서도 당연히 이걸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本委員이 문제를 提起하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都市가스 會社가 몇 개지요, 일곱 개지요?

○財務局長 裴文煥; 다섯 개입니다.

○李秉守 委員; 일곱개 아니고?

○財務局長 裴文煥; 다섯개입니다.

○가스課長 金致經; 그건 京畿道까지 包含해서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러면 全國에 몇 개예요?

○財務局長 裴文煥 ; 都市가스課!

○가스課長 金致經; 全國에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다섯 개.....

○李秉守 委員; 全國에 23個 會社가 있고, 서울에 일곱個이 고.....

○가스課長 金致經; 서울에 다섯개 입니다.

○李秉守 委員; 아무튼 다섯 개든 일곱개든 간에 이 都市가스 會社가 이것이 中小企業이 아니고 全部 大企業이거든요. 政府나 당시 서울市에서도 都市가스 이것을 供給하는 이 自體가 하나의 公益性 事業이지만 사실 投資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말은 특혜를 주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A會社는 무슨 區, B會社는 무슨 구 이런 式으로 區域을 딱 나눠서 서로 경쟁을 못하도록 區域을 나눠서 하도록 정해 주고, 얼마 전에 新聞을 보니까 앞으로 都市 가스 普及率을 높이기 위해서 都市가스 業者들에게 서울市가 빚더미 속에서도 어떤 기금을 가지고 50%를 低利로 融資해 주겠다 하는 그런 方針이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난 것을 보았는데, 本委員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비록 公益性 事業을 하고 있지만 이미 開發하는 草創基에는 財産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稅制面에서 支援을 해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의 市場 占有率이, 이 모든 기반 LNG 대강 施設이 거의 基本 幹線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投資할 만큼 다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지엽적인 간선만 조금 남았고, 이것 자꾸 擴大 擴大해 가면서 거기에 投資되는 것은 이미 거기에 相應하

는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稅制上의 特惠까지 이제 안 해 줘도 될 단계에 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市에서 이 사람들에게 50%의 소위 減免惠澤을 주는 것이 金額上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묻고 싶고, 그것이 상당한 金額이라면 이것을 改正해서 향후 3年間 다시 50%減免해 주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제의 條例를 확정 짓기 전에 政策的인 어떤 再考가 필요한 時點에 와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스물 몇 개 무더기 條例를 다루지만 이 중에서 이것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는데.....

○稅政課長 鄭鎮克;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난번에 本會議에서도 말씀을 전부 드린 사항인데, 지금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시고 그런 사항인데요. 서울市的 都市가스 취사용의 普及率은 91年度 現在는 24.9% 目標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 난방용은 7.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明年度の 事業을 전부 해 봤자 295萬家口중에 90萬가구 30.6%만이 혜택을 보고, 다음에 난방은 32萬가구 10.8%만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30% 수준도 아직 投資를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당초에 이 條例가 생긴 目的은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投資 額數가 한 번에 많은 投資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資本의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支援해 주는 건데요. 來年度에 支援해 주면 얼마나 될까하고 저희가 推算을 해 봤더니 84건에 567萬원 정도입니다.

○李秉守 委員; 얼마?

○稅政課長 鄭鎮克; 567萬원, 이 內容은 뭔가하면.....

○李秉守 委員; 아, 稅制上의 혜택이.....

○稅政課長 鄭鎮克; 네. 取得稅가 42件에 227萬원, 登錄稅가

42件에 340萬원 이래서 567萬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면서 炊事用과 煖房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적인 支援 形態 이런 것에 不過합니다. 內容은 주로 뭐냐하면 都市 가스官을 묻게 되면 중간에 매인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시설에 그것이 道路로 들어 갈 경우에는 道路使用料가 免除되고, 그 다음에 거기 私有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私有地가 있으면 몇 坪입니까? 2坪, 3坪?

○가스課長 金致經; 5坪 내외.

○稅政課長 鄭鎮克; 네, 5坪 내외 그것 사는 것에 대한 取得稅, 登錄稅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今年까지 100% 줬던 것을 작년 年末에 50% 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너희 좀 많이 普及해라 하는 그런 次元입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지금 財務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도 都市가스 보급 內容이니 市場이 어떻게 그 事業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아요. 지금 昨年에 우리 나라 環境處에서 首都圈 大氣汚染 抑制策 次元에서 전용면적 35坪의 아파트단지에는 이미 LNG施設을 의무화 했거든요. 금년에 30坪, 來년에 25坪,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가 전부 병커C유 되던 것을 LNG로 義務化해서 이미 基本 대강 施設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수익자 부담이에요.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管 施設에 대한 비용을 전부 100% 負擔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制度的으로 보장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각 업무용 빌딩에도 냉·난방 시설이 LNG로써 다들 들어가기 때문에 市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庶民住宅에는

LNG가 아직은 일러요. 이것이 병커C유보다 가격이 두배반이나 비쌉니다. 물론 그런 데까지 都市가스를 확대 普及하기 위해서 서민촌의 문제에 대해서 市次元에서 가령 稅制上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그건 말이 돼요. 말이 되지만 일반화된 이市場에 그런 稅制上 혜택을 해보야 5·600萬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명분상 형평에 이것은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가스課長 金致經; 委員님, 이것은 韓國가스公社가.....

○委員長 朴尙東; 아니, 答辯은 課長님이 하시지 마세요. 그資料만 提供 받으세요.

○가스課長 金致經; 韓國가스公社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韓國가스公社가 주 라인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가스會社가 뽑아 갑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94年度까지 稅制 혜택을 韓國가스公社가 한 95%.....

○李秉守 委員; 이것이?

○가스課長 金致經; 네, 일반 다섯개 會社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韓國가스公社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韓國電力 또 서울市가 여기에 出資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물론 가스公社야 100% 政府役資公社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中央部處의 機構라도 서울市內에 들어오면 應分の 稅金은 내야지.....

○가스課長 金致經; 그래서 94年度까지 韓國가스公社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만 合併하고 大峙洞, 傍花洞, 木洞에다가 밸브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밸브실을 설치하자면 한 100坪에서 어떤 것은 1,000坪까지 사용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稅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政府가 強制的으로 말겁니다. 義務的으로 년 밸브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인

데 이것을 혜택을 안 주면 또 저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强制性을 띠는 國家에서.....

○全潤杓 委員; 이것하고 別個人데 뭐 하나 물어 볼게요.

○가스課長 金致經; 네.

○全潤杓 委員; 5個 民間會社가 있지요?

○가스課長 金致經; 네.

○全潤杓 委員; 그럼 가령 西大門에서 하는 業者가 있고, 江南에서 하는 業者가 있고, 九老에서 하는 業者가 다를 것 아닙니까?

○가스課長 金致經; 네.

○全潤杓 委員; 그러면 100m를 가정으로 끌어넣었을 적에 가격은 어느 會社나 똑같이 나오니까, 다릅니까?

○가스課長 金致經; 그것은 價格이 會社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地形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地域이라도 그 建物構造에 따라 배관 길이가 차이가 있고 또 工事に 차이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가, 地下를 파고들어 간다든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적으로 한 家口當 70萬원에서 150萬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全潤杓 委員; 幹線道路에 지금 묻혀 있는 韓國都市가스에서 물어 놓고 거기서부터 業者가 따가지고 들어가지요?

○가스課長 金致經; 네, 그렇습니다.

○全潤杓 委員; 그런데 거기서 따 가지고 들어갈 때에 이것이 메인 파이프에서 가령 그 안에 世帶가 100世帶가 있는데 내가 이제 놓고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李委員은 지금 나 옆 집에 사는 데 지금 아직은 놓을 계제가 안 되었다 이러면

나 혼자 따가지고 올 적에 나 혼자 다 무는 거요?

○가스課長 金致經; 이제 이것은 工事は 어디까지나 自由契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市內에 施工會社가 174개 會社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는 언제나 그 누구와 해서든지 자유로 契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配管이 놓인 데는 쉽게 따고쳐도 돼요. 예를 들어 한 50m, 100m 먼데 있는 데는 本人이 끌어들이지 않고는 현재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全潤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가 먼저 필요하다 이라면 100m고 200m 따 왔을 때에는 내가 다 물고, 그럼 내가 물은 다음에 이제 우리 李委員이 놓으면 그러면 나 있는데서 그것 들어가는 費用은 아주 요만큼 되겠네?

○가스課長 金致經; 네. 없습니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水道나 마찬가지로 分擔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分擔金.

○全潤枸 委員;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나 자신이 지금 놓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놓겠어. 따오는데 100m인데 그러면 數百萬원 내 놓으라 이거야 한 500萬원. 그 다음에 놓으면.....

○委員長 朴尙東; 800萬원, 뭐 1,000萬원 이래요.

○全潤枸 委員; 그것 어떻게 合理的으로 고칠 길은 없나요?

○가스課長 金致經;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서울市 基金이 100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全部 앞으로 計劃 배관해서 여기서 어느 地域까지는 너희가 무조건 그냥 놔라.....

○全潤枸 委員; 됐어요.

○崔明鎭 委員; 答辯하시는 분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가스課長 金致經; 가스課長입니다.

- 崔明鎭 委員; 가스課長이요?
- 가스課長 金致經; 네.
- 崔明鎭 委員; 가스課長님께서는 가스 事業者, 다섯 個 그 事業者들에 대해서 命令을 할 수 있는 權限이 있습니까?
- 가스課長 金致經; 지금 命令權限이 없습니다.
- 崔明鎭 委員; 없지요?
- 가스課長 金致經; 네.
- 崔明鎭 委員; 아까 答辯하신 內容중에 金額이 施工構造에 따라서 金額이 틀리는 것이지, 業者에 따라서 金額이 틀리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 가스課長 金致經; 네.
- 崔明鎭 委員; 사실인지 確認해 보셨습니까?
- 가스課長 金致經; 그것은 自由契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崔明鎭 委員; 왜 答辯을 그렇게 하십니까? 業者에 따라서 價格이 千差萬別입니다. 그건 이미 알려진 事實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 全潤杓 委員님이 質疑하신 그 內容에 答辯을 그렇게 虛僞로 하십니까?
- 가스課長 金致經;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崔明鎭 委員; 큰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가스課長 金致經;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같은 地域에도 집집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 崔明鎭 委員; 그 構造에 따라서가 아니고 똑같은 構造라 하더라도 業者에 따라서 불러서 價格 策定을 해 보면 千差萬別입니다. 그 額數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가스課長께서 지금 答辯하신 바대로 어떤 命令을 할 수 있는 權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狀態에서 이건 特惠를 준다는 것은 合理



的이지 못하네요. 지금 서울市民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事業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스 事業者 한 군데 뿐입니까?

(「質疑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金炯奎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炯奎 委員 ;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지금 都市가스 事業에 대해서 여러 委員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都市가스事業者라고 하는 것에 대한 基準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도시가스 사업자냐? 또 지금 도시가스업을 정부에서 出資하는 韓國가스 公社가 있는데 우리 서울市の 경우에는 다섯 개의 業者가 都市가스를 지금 供給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개 事業者를 우리 서울市에서 政府처럼 公營化, 서울市에서 公營化 運營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水道와 다른없는 燃料 政策에 또 우리 서울市の 環境對策에 이러한 問題가 있기 때문에 100億원씩 基金을 해서 補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基本的으로 都市가스工事を 서울市에서 公營化하는 그런 供給體系를 一元化하는 그런 都市가스 公營化體系를 해서 서울市 가스課長도 직접 都市가스 事業者에게 示達하고 職務를 聯關시킬 수 있는 그러한 便宜的인 制度를 아울러서 圖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都市가스 事業에 대한 서울市 公營化制度 이 문제에 대한 對策을 좀 묻고 싶고, 本 條例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지금 가스 擔當課長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課長이 의도하는 改正條例案 內容을 보면 상당히 가스業者하고 아까 그 회임기간이 길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보다도 더 상당히 가스業者하고 密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條例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課稅上에 있어서는 免除規定이 있는

것은 당연면제와 신청면제 또는 輕減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면제 그렇게 表現을 하고 있는데, 지금 區廳長이 輕減 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경감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輕減을 해 주겠다, 그러면 實質적으로 課稅公務員이 區廳長인지 또 明示적으로 機關의 長을 표기하기 위해서 區廳長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輕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稅法 論理에 의하면 當爲免除가 아니고 申請免除입니다.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輕減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申請해서 輕減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장이 輕減 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 都市가스業者가 미운분이 있을 때는 申請對象인 것을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申請이 안 들어 왔으니까, 이와 같은, 다시 말하자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輕減措置 與否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렇게 서울시가 가스業者하고 密着을 하려면 뭐 區廳長이 輕減 뭐 알고 자시고 간에 무조건 輕減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輕減도 50%만 輕減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免除를 해 버리든지 이와 같이 해야지 이렇게 서울시가 가스業者하고 밀착되는 듯한 그런 印象의 條例案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點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번째로는 가스業者에 대한 서울시 公營化, 우리가 株式會社로 해서 都市燃料供給에 대해서 이권화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政府와 같이 韓國가스公社처럼 이것은 서울가스公社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直營할 수 있는 公營化體系의 對策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取得稅 減免에 대한 문제가 區廳長이 輕減 對象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에 의해서 輕減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자의적인 職務態度는 버려야 될 것임으로 서울市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基本的인 취지가 50% 輕減에 目的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申請을 안 해도 輕減하고 싶어서 輕減이란 소리를 쓰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한 10分 停會를 좀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그렇게 하지요. 가스課長께서 金炯奎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金炯奎 委員; 아, 그리고요. 하나 빠졌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補充해서?

○金炯奎 委員; 아닙니다. 두 번째 큰 質疑는 議案番號 190 번 새마을事業支援이라고 했는데 새마을事業이라고 하는 것이 住居 聚落構造改善의 事業만이 새마을事業이신지. 이것저것 새마을事業 支援이라 해서 새마을 무슨 協議會니 새마을 指導者가 하는 事業이 새마을事業인지, 새마을事業이라는 그 定義, 카테고리, 그 對象 이것을 분명히 좀 이야기를.....

○稅政課長 鄭鎭克; 취락구조 改善事業이 서울市에 지금 다섯 개가 있어서 5년이 지났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聚落構造事業 單一事業인지.....

○稅政課長 鄭鎭克; 네, 서울市는 聚落構造 改善事業이 주로 該當이 되고.....

○金炯奎 委員; 골목 鋪裝하는 것은 새마을事業이 아니다?

○稅政課長 鄭鎭克; 네.

○金炯奎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이제 우리 條例 改·廢問題를 能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53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가스課長께서 金炯奎 委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課長 金致經; 5個 가스會社에 대한 서울시 公營化에 대한 答辯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혀 檢討되지 않고 또 現在로서는 不可能하다고 判斷됩니다.

○金炯奎 委員; 不可能한 理由가 뭐지요?

○가스課長 金致經; 그것은 이미 각 5個 會社가 앞서 配管이 다 돼 있고, 그리고 각 個人會社의 財産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統合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것 한 번 짚고 定理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政府에서 出資하는 한국가스公社, 이 사람들의 財産이 지금 가스管 직경 몇 mm짜리가 그 사람들 財産입니까?

○가스課長 金致經; 메인管만 그 사람들 재산.....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메인管이 직경 몇 mm짜리를 메인管이라고 해요?

○가스課長 金致經; 500에서 한 600mm까지.

○金炯奎 委員; 아니, 500에서 600mm?

○가스課長 金致經; 네.

○全炯奎 委員; 그러면 5cm에서 6cm?

○가스課長 金致經; 50cm서부터 60cm.

○金炯奎 委員; 50cm서부터 60cm까지가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것은 대충 가스供給能力이 몇 천 世帶나 몇 萬 世帶를 收容할 能力이 있는 거예요?

○가스課長 金致經; 현재 저희가 今年末까지 합해서 72萬 4,000家口를.....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서울市の 燃料對策 問題나 環境對策의 一環으로써 도시가스를 권장하고 있는 편인데, 政府에서 出資하고 있는 韓國 가스公社 財産하고 지금 서울市 일원에 있는 가스業者 다섯사람들간의 財産이 區分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50cm에서 60cm의 메인 도시가스관하고 또 거기에서 따서 오는 그것보다도 적은 規模의 가스관을 서울市에서 다섯 개 業者에게 맡긴 그 사람들의 財産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가스課長 金致經;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그것이 한 개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市 일원에 있는 다섯個 가스公社의 工事原價 문제랄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하고, 또 그 가스公社 財産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需用者가 負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 메인 50내지 60cm의 가스도수관은 政府 出資會社의 財産이니까 그 사람들이 負擔하는 것이고, 그 50내지 60cm에서 따가지고 나오는 중간 가스導水管은 지금 서울市內에 있는 다섯 개 業者의 財産이고, 그 中間導水管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그 문제의 費用은 需用者가 負擔

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스課長 金致經;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限界를 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50내지 60cm에서 자기 需用한 것까지 따가지고 오는 그 문제는 아까 말하는 서울시에서 銀行融資를 알선해 준다든지, 또 서울시에 있는 基金을 그런데다가 活用을 하든지 등등의 문제가 되니까, 아까 全潤構 委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메인에서 집하고 한 100m 되는데 그것이 집에서 活用을 하려면 가스導水管이 한 2cm나 3cm 정도의 導水管만 가지고 나오면 내 집을 쓸 수가 있는데, 나는 내 집 목적으로 그렇게 조그마한 가스라인을 設置하도록 해서 내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또 거기서 찢어갈 때는 供給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본 메인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內 5個 業體가 자기 財産이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겠고, 거기서 需用者인 각 가정에 들어가는 進入가스관은 需用者가 負擔을 해야 되겠고 무슨 限界를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로 보면 이 가스를 장려하면서도 지금 가스工事費가 많아서 실지 그것이 普及이 안 되는 形態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具體적으로 그런 對策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對策만 세워 가지고도 이것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指示命令할 수도 없다 하고 아까 答辯을 했는데, 그렇게 業務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여기에 取得稅 50% 輕減措置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나는 그 需要者가 가스公社를 도와줘서 친절하게 工事費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減免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輕減措置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都市가스 公營化 문제는 지금 檢討도 안 되고 이미 그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스課長 金致經;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것 우리 서울시에서 年賦로 지금 投資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아요?

○가스課長 金致經;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動資部에서 政策的으로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動資料문제는 韓國가스公社 문제지, 예를 들어서 法 改正事項이 그런 問題지만 이걸 지금 株式會社 아닙니까? 株式 會社지요?

○가스課長 金致經;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다섯 개 法人이 지금 株式會社지요? 그럼 商法上 문제인데 우리가 條例로서 規律해서 다섯 개 財産은 所定 法人稅法에 의해서 評價를 해서 서울시에서 산다든지, 어떤 基金化의 정립을 할 때까지 너희들이 管理運營한다든지, 무슨 對策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뭐 動資部 미를 필요도 없잖아요. 主務課長으로서.....

○가스課長 金致經; 네, 알겠습니다. 委員님의 뜻에 따라

○金炯奎 委員; 그것 분명히 研究檢討해서 追後에 우리 在京 委員會나 또는 關係 常任委員會에 반드시 報告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가 또 나올 테니까 研究檢討 잘 해봐요」 하는 委員 있음)

○兪相根 委員; 가스業者를 選定하고 하는 것은 公社에서 全部 하지요?

○가스課長 金致經; 아닙니다.

- 俞相根 委員; 그럼 어디에서 해요?
- 가스課長 金致經; 다섯個 會社는..... 서울市長이 許可를 합니다.
- 俞相根 委員; 그런데 그러면 각 區廳마다 指定業體들 選定해 있지요?
- 가스課長 金致經; 네.
- 俞相根 委員; 그 섹터를 지금 그 公社에서 나눠준 것이지요?
- 가스課長 金致經; 아닙니다.
- 俞相根 委員; 그러면 누가 나눠줬습니까?
- 가스課長 金致經; 施工會社는 자기가 있는 事務室의 所屬된 區廳에다 登錄을 합니다.
- 俞相根 委員; 그러면 각 區廳에 業者를 더 選定할 수 있습니까?
- 가스課長 金致經; 그것은 얼마든지 制限이 없습니다.
- 俞相根 委員;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이, 業者가 한 두名, 제가 東大門區만 봐도 業者가 대한가스가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都市가스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橫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橫暴를 管理할 수 있는 權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가스課長 金致經; 5個 會社에 대해서는 市가 하고, 施工會社가 있습니다. 施工會社는 區廳 管理事項입니다. 그런데 5個 會社에 대해서 市가 監督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許可를 하기 때문에 許可要件이 있습니다. 許可要件에 대해서는 감독을 합니다.
- 俞相根 委員; 그러면 만약에 橫暴를 부렸다. 무슨 橫暴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스課長 金致經;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民團體나 環境分科委員會에서도 많은 建議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工事期間이 길다, 또 金額이 全部 一定하지 않다, 또 너무 不親切하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綜合적으로 1月頃에 檢討해서 最小限度로 來年度에는 是正할 때에 最小의 民원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俞相根 委員; 됐습니다.

○稅政課長 鄭鎮克; 地方稅 減免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申請主義는 課稅要件이 免除要件을 알 수 없을 경우에, 구청장이 申請에 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때는 減免條例를 適用해서 減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에 申請主義를 따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職權主義 問題는 申請이 없어도 區廳長이 減免資料를 가지고 있으면서 減免해 줄 수 있다면 民願人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딴 뜻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닙니다.....

○稅政課長 鄭鎮克; 여기서 市稅減免에 관한 條例. 지금 現行 20건을 저희가 資料로 提出했습니다만 이중에서 廢止 3건과 制定 1件은 現行 條例가 아니기 때문에 提出되지 아니 했고 15件 중에서 職權主義로 나와 있는 것이 13건이고 申請主義로 나와 있는 것이 3件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稅法의 理論은 輕減이면 輕減問題는 申請을 함으로 해서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國稅인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지. 금방 주민의, 국민의 便宜를 위해서 稅法에 의해서 關係官이 確認이 되면 輕減을 해줘라 그렇게 義務事項을 맘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가스業者가 서울市

내에 다섯 개 있다고 한다면 다섯 개 輕減한다 그러면 되지, 굳이 區廳長이 인정할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輕減한다. 區廳長이 善心쓰는, 말하자면 이 條例의 文書로서 美化시키는 이러한 문제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事業者가 다섯 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管轉 區廳長은 우리 區의 어느 분이 都市가스業者다, 그것은 명백한 데 어떻게 해서 한 쪽은 申請하고 또 申請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때는 輕減해 준다. 적극적인 수용태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稅法의 法律主義的인 立場, 그런 立場에서 輕減이면 반드시 申請이 있어야 輕減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申請이 必要없고 금방 積極的인 檢討方案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50% 輕減한다 이렇게 하면 申請도 필요 없이 당연 輕減事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積極的으로 檢討하는 立場에서 區廳長이 善心쓰듯, 市에서 條例가 善心쓰듯 당연히 내 自治區에는 어느 가스業者가 하고 있다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꼭 굳이 輕減申請을 要求하며 또 申請이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니까 輕減措置한다, 그 무슨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輕減問題나 免除問題는 申請主義면 申請主義, 當然免除면 當然免除, 이렇게 劃一的으로 國民에게 義務를 賦課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일한 하나의 事案에 대해서 申請과 職權的인 當然性和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租稅法律主義의 執行力에 劃一性을 기해야 되는데 이건 自意性이 더욱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스業者를 輕減을 해줘도 좋고, 또 區廳長이 챙겨서 輕減을 해줘도 좋은데 그렇게 善心 쓸 필요 없이 아예 輕減을 하려면 50% 輕減한다, 이렇게 하면 申請도 必要

없어요. 무슨 그런 條例上에 善心쓰는 그런 입장의 뜻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스業者로부터 申請 안 해도 區廳長이 輕減해 주는 것인데 이것 申請하는 用紙라도 또 交通費라도 時間의 浪費라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所信 있게 50% 輕減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申請에 의해서 50% 輕減한다 이런대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擇하세요. 本委員 생각은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鄭鎮克; 金委員님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案은 內務部準則에 의해서 全國的으로 지금 施行이 되고 있어요. 地方稅減免問題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職權主義하고 申請主義 두 가지로 이렇게 區分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職權主義는 어디까지나 民願人의 側面에서 課稅制를 알 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課稅를 안 해주면 申請을 안 했다고 해도 課稅한 후에 또 申請을 한 후에 다시 減免해 주는 이런 모순점이 發生합니다. 그래서.....

○金炯奎 委員; 여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申請主義와 職權主義라고 하는 그 문제가 不特定 多數人의 納稅義務가 있는 對象이 있을 때 그런다 하지만 설사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도시가스 事業者라고 規定되어 있는 特定事業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서울市內 다섯 개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자치구는 누구 가스業者가 供給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다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事項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自由競爭에 의해서 獨占化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可能하고 또한 自治區 團體長으로서 그런 善心的인 것이 그럴 때 가서 行政의 妙味를 위해서 필요가

있지만, 이걸 분명히 다섯 개 業者로 特定的으로 限定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都市가스 業者의 범위를 물었는데 다섯 개 業者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섯 개 業者 밑에 있는 施工業者도 都市가스事業者 범위에 包含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稅政課長 鄭鎮克; 包含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包含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섯 개 事業者란 것은 固定的으로 特定業者 아주 指目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職權이 필요해요.

○稅政課長 鄭鎮克; 지금 말씀하신 대로 輕減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나, 職權할 수 있다 이렇게 表現하나 效果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修正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區廳長이 輕減을 챙겨서 해 주는 것하고, 본인이 輕減申請을 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50% 輕減한다 해 버리면 申請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行政의 便宜性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效果가 똑같다고 한다면 마치 區廳長이 당신 오늘 申請 안 냈는데 내 輕減해 줄게 하고 電話로 善心쓰는 그런 立場의 條例가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 意見에 同感하는 것으로 보고 50% 輕減한다 이렇게 改正하는 것을.....

○稅政課長 鄭鎮克; 委員님 말씀대로 端緒 條項을 削除하는 그런.....

○金炯奎 委員; 但書條項을 削除한다?

○稅政課長 鄭鎮克; 네, 但書가 지금.....

○委員長 朴尙東; 區廳長이 輕減對象을 하는 이것 말이지요?

○稅政課長 鄭鎮克; 네.

○委員長 朴尙東; 異議가 없어요? 主要骨子の 다 項 말이지요?

○金炯奎 委員; 네, 案4條 但書を 削除한다.

○稅政課長 鄭鎮克; 都市가스事業에 대해서만 委員 말씀대로 都市가스業者하고 도매業者인 가스協會에만 該當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님 말씀대로......

○金炯奎 委員; 어디요?

○稅政課長 鄭鎮克; 都市가스 事業者에 대한 免除 條例 이것은 다섯件이 그 業者가 다섯 사람이고, 그리고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경감한다 그런 뜻으로......

○兪相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事業法 第3條에 의한 都市가스業者는 분명히 사람이지요?

○稅政課長 鄭鎮克;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이 事業者가 방대하게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主體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原案을...... 법리상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稅政課長 鄭鎮克; 지금 都市가스事業法 原文을 보시면 4條 免除申請 1項이 있고, 2項이 있습니다. 그 2項에 "다만 區廳長이 課稅免除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申請이 없는 경우라도 職權으로 課稅免除 할 수 있다"이 條項만 削除를 하겠습니다. 다섯 사람만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시면 우리 稅政課長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네요.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그 있지요? 提案 날짜 12月 6日字에 보면 1페이지에 法理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都

市가스事業法 第2條, 第1條 및 第1號 및 第2號 여기서 "都市 가스 事業이라 하면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 이하 가스라 한다"를 供給하는 事業(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除外한다)으로써 가스도매 사업 및 일반 도시가스 事業을 말한다 "2호에 가서 "도시가스事業者라 함은 第3條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은 가스 都賣事業者 및 一般 都市 가스事業者를 말한다"지금 다섯 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데 어떻게 그렇게 다섯 개만 都市가스 事業者로 아까 저에게 對答을 했어요?

○稅政課長 鄭鎮克; 아니 저희가 免除를 해주고 있는 對象者가 지금 다섯 개의 事業者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극동 도시가스, 한일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이렇게 다섯 개고요, 아까 우리 가스課長님께서 말씀드린 그 가스 事業 公社가 都賣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개입니다.

○金炯奎 委員; 여러 개 이렇게 不特定 多數人 경우일 때는 申請免除가 原則입니다. 申請輕減이 原則이에요.

○稅政課長 鄭鎮克; 不特定 多數人이 아니고 저희들이 運營해 오고, 全國적으로 施行해 오고 있는 事項은 課稅免除 要件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申請主義를 하고 있고, 免除要件을 全部 區廳長이 미리 알아서 免除를 해줄 수 있을 경우에는 積極적인 글에서 民願人 편에 서서 免除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申請이 없어서 課稅한 후에 申請이 들어와서 다시 免除해 주고 하는 이런 煩雜性때문에 처음부터 區廳長이 알면 免除를 해준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行政의 自意性에 의해서 그

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國稅인 경우에는 반드시 申請輕減은 輕減申請이 없으면 輕減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免除라고 하는 것은 또 課稅標準申告를 免除分으로 해서 申請이 되어야 免除가 되는 거 하고, 당연히 免除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種類가 있어요, 免除도..... .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제가 보기에 申請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條 但書 그것만 削除를 하면 輕減申請의 原則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條 但書 삭제하고 輕減申請이 原則입니다. 그렇게 整理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金炯奎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지요?

○稅政課長 鄭鎭克; 네.

○委員長 朴尙東; 但書 4條 削除하도록 저희들에게 決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나만 더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李聲九 委員; 議案番號 187號 社會教育施設에 대한市稅免除에 대한條例改正인데 그것이 아직 理解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社會教育施設이라고 했는데 免除되는 對象建物이 具體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稅政課長 鄭鎭克; 지금 社會教育施設이라고 하면 社會教育法 第1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國民에게 平生을 통한 社會教育의 機會를 附與해서 國民의 資質을 향상함으로써 국가 社會의 發展에 奇與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教育廳으로부터 저희가 調査한 것에 의하면 一般社會教育施設해가지고 教育委員會에 登錄되어있는 것인데 정능교회에 敷設되어 있는 老人學校, 이런 것이 該當되고 그 다음에 大學附設로 되어 있는 平生教育院이 梨花女子大學校 平生教育院, 명지대학교 平生教育院 이런 것이 該當이 됩니다만, 여기 大學敷設 平生教育院은 大學의 施設은 이미 母法에 의해서 地方稅法에 의해서 免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該當은 없겠습니다. 또 學力 認定하는 社會教育施設이라고 해서 성지학교 같은 이런 것이 여기에 該當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學校形態의 社會教育施設으로써는 中部職業少年學校라든가 이런 形態를 말합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條例 免除시킴으로써 年間 免除되는 金額이 얼마입니까?

○稅政課長 鄭鎮克; 지금 여기에서 追加로 미술관이 免除 對象으로 두 개가 追加되어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都市計劃稅가 22件이 봄에 建物에 대한 都市計劃稅, 가을에 土地에 대한 都市計劃稅를 걸어서 22件, 그 다음에 消防本部에서 할 때 11件 해서 33件的 1,481萬원 程度가 減免되지 않을까 이렇게 推定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네, 잘 알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質問하는 要旨는 社會教育施設이라는 것이 좀 規定自體가 애매하고 해서 아마 社會教育施設을 빙자해서 課稅免除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우려되고 對象 建物 選定上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執行上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問議를 했는데 하여튼 建物對象選定이라든가 구체적인 執行할 때 상당히 주의스럽게 하길 바랍니다.

○稅政課長 鄭鎮克; 네. 알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이제 오늘 上程된 案件을 整理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 들께서 整理에 대한 發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動議를 하시게 되면 動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修正을 한다든지 또는 除外를 시킨다든지 또는 우리가 上程된 案件을 다른 委員會로 回附를 한다든지, 이것을 분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一括 原案대로 委員들이 同意를 해서 通過시켜 주시든지 議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俞相根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俞相根 委員; 市有財産管理同意案에 대해서 買入과 賣却은 原案대로 通過를 시키고 讓與 問題에 대해서 아까 崔明鎭 委員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個 區廳의 公評의 原則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먼저 常任委員會에서도 學論되었던 것이 讓與를 繼續해 주다 보면 각 區廳의 衡平의 原則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區廳에서 앞으로 서울市 財産을 讓與해 달라고 또 이런 要請이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江南區廳 같은데는 自立度도 높고 한 地域이기 때문에 城東區廳이나 江南區廳에서 올라온 讓與問題는 保留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本委員의 意見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保留할 것을 同意합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再請 있습니까? 保留입니까? 除外입니까?

(「否決이죠」 하는 委員 있음)

除外나 否決이나 같은데 用語를 좀 잘 하셔서 否決보다 除外를 시키기로.....

○俞相根 委員; 이것은 江南區廳 같은데는 自立도가 높으니까 아주 除外시킵시다.

○委員長 朴尙東; 除外시킬 것을 同意합니까?

再請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23項 議案番號 208號인데 主務局에 잠깐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案件을 다룰 때 同意 案이나 承認案은 可否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一括 묶어서 正式 議事日程 23項에 묶여 있기 때문에 分離 處理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財務局 側에서 저희들 그 讓與分에 대한 것을 제외를 시키도록 動議案이 들어왔기 때문에 分離해서 案件을 處理해도 異議가 없으면 다른 것은 이 23項에 대해서 可決을 시키고, 그 讓與分은 除外를 시키더라도 異議가 없다면 하나의 修正動議案이 됩니다. 財務局 側에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財務局長 裴文換; 委員長님, 그 趣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委員長 朴尙東; 충분히 압니다. 說明 더 안 해도 됩니다.

○財務局長 裴文換; 그래서 그 處理하시는 技術上的 問題로. 그렇게 되면 다시 同意를 내야되는지 그런 問題가 있어서요?

○委員長 朴尙東; 아니, 일단을 除外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裴文換; 네.

○委員長 朴尙東; 讓與分에 대한 것은 除外를 시켜야 되겠다

는 動議案이 들어와서 再請이 되어서 動議案이 採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原則적으로는 23項 自體를 一括 可否를 물어 야 되는데 일단 23項의 다른 賣却分이나 또는 저희들 取得分에 대한 것은 異議가 없기 때문에 原案대로 通過를 시키겠습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네.

○委員長 朴尙東; 讓與分에 대한 것은 除外를 시킬테니까 異議가 없으시죠?

○財務局長 裴文煥; 네, 없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좋습니다. 그렇게 一括, 제가 이따 議事棒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提案者 側에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讓與分에 대한 것을 일단 除外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議案整理하는데 意見 있으면 말씀 하시지요.

네. 李聲九 委員 말씀해 주시지요.

○李聲九 委員; 다른 疑案 同意하기 前에 賣却 讓與問題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아니 일단 讓與問題는 質疑終結했기 때문에 委員님 양해해 주시고.....

○李聲九 委員; 아닙니다. 방금 修正을 分離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主務部署에서 성가시더라도 取得이나 賣却, 讓與, 件件別로 議案番號를 붙여서 올려보내주면 우리가 이런 個別 選取하고 버리고 이를 다루는데 아마 이런 혼란이 안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매년마다 다른 同意案을 提出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올까 싶어서.....

○委員長 朴尙東; 李聲九 委員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23項을 하나로 묶지 말고 취득에 대한 것을 한 건으로 하고,

讓與分에 대한 것을 한 件으로 하고, 賣却에 대한 것을 한 件으로 해서 分離해서 다음에 議案을 上程할 때 그렇게 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裴文煥; 네.

○委員長 朴尙東; 그렇게 앞으로 李聲九 委員의 말씀에 대해서 參考로 해서 앞으로는 한의 議案處理를 能率的으로,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分離를 해서 議案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李委員님 말씀 그 要旨가 맞지요?

○李聲九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다른.....

○李聲九 委員; 李聲九 委員입니다. 多家口住宅에 대한 市稅不均一課稅에 대한 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動議案을 提出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 하세요.

○李聲九 委員; 本條例 廢止條例案은 條例廢止여하에 不拘하고 多家口用單獨住宅에 대한 繼續的인 稅制 惠澤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條例廢止하더라도 別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또 施行期間이 今年 12月 31日로 豫定되어 있으니까 別 關係는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市議會에서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別途로 繼續 論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條例整備特委에서 또 要請도 있고 해서 이 問題를 오늘 여기에서 일단 通過시키지 말고 留保해 그대로 둘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李聲九 委員의 動議內容 뭐냐하면 議事日程 第19項에 多家口住宅에 대한 市稅不拘一課稅에 관한 條例 廢止條

例案을 廢止하지 말고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가 서울시議會에 構成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回附를 해서 再檢討를 해 줘면 좋겠다는 그러한 動議를 해 주었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委員님들?

(「네」 하는 委員 있음)

우리가 廢止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條例案이 期限이 되면 다시 또 同期를 延長해서 3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특히 多家口住宅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것은 研究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가 있습니다. 委員會에 回附를 해서 檢討를 해서 廢止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이 件 그런 式으로 回附하도록 일단 動議案을 내주셨고 또 再請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따 一括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內容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죠?

(「네」 하는 委員 있음)

네, 그리고 金炯奎 委員님께서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중에 바로 4條 區廳長이 輕減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는 輕減申請이 없을 경우라도 職權으로 輕減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 行政할 수 있도록 하는 4條 但書條項을 없애자는 그런 議案에 執行部側에서 양해를 했지요?

○財務局長 裴文煥; 네.

○稅政課長 鄭鎭克; 제가 追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朴尙東; 追加요?

○稅政課長 鄭鎭克; 네, 追加 말씀.....

○委員長 朴尙東; 追加이야기 必要없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

에 金炯奎 委員 質疑에 대해서 그것은 削除를 해도 좋겠다는 意見을 주셨지요?

○稅政課長 鄭鎭克; 네, 同意합니다. 同意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減免條例 提案을 한 것은 免除申請이란 말을 輕減申請으로 바꾸주고 그 다음에 課稅免除를 不均一課稅로 바꾸어주고, 課稅免除를 각각 輕減으로 한다는 이것만 提案을 했습니다.

그리고 內務部長官으로부터 저희들이 地方稅法 第9條에 의한 許可를 받을 때에도 이것만 許可를 받았기 때문에 金委員님 말씀은 來年度에 저희들이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地方稅法 9條에 의해서 다시 받아서 그 때 提案을 해서 削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金炯奎 委員님.....

(「이번에 留保하자는 거요」 하는 委員 있음)

○稅政課長 鄭鎭克; 아니지요. 지금 提案한 것이 內務部長官 許可를 받아서 提案한 것인데 이 提案內容이 必要없습니다. 그래서 그 部分에 대한 것은 來년에 地方稅法 9條에 의해서 內務部長官 許可를 받아서 다시 提案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렇다면 이걸 留保를 시켜야 되겠네, 이 條例案은 留保를 시켜야 되겠네, 그럼.....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요? 우리가 議會에서 決議하면 그것으로 執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內務部長官 承認을 얻고 그렇게 되면 이 條例案 뭐 하러 議案으로 올렸어요?

○金炯奎 委員; 條例制定을 內務部長官이 하는 거요?

○委員長 朴尙東; 條例制定을 누가 하는 거요?

○稅政課長 鄭鎭克; 아니, 제가 말씀 올릴게요, 지금 저.....

○委員長 朴尙東; 아니, 그럼 아까 충분히 檢討가 되어서 또 主務課長께서 충분히 妥當性이 있다고 肯定的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質疑終結되었고, 일단이 議案에 대한 것을 整理를 해서 제가 表決에 붙일 생각입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委員長님…….

○委員長 朴尙東; 整理를 하는데 金炯奎 委員의 質疑와 또 主務課長의 答辯이 달라요. 內務部長官이 承認해서 다시 이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條例改·廢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內務部長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報告를 하십시오. 議會에서 決定해 주면 그대로 報告를 하면 됩니다.

○稅政課長 鄭鎭克; 그런데 法 節次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專門委員님께서도 한 번 檢討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提案한 內容이 輕減할 文句調整만 提案을 했고 그것만 內務部長官 許可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아니, 4條를 이것을 除外하자고 그랬잖아요?

○稅政課長 鄭鎭克; 除外하자고 그랬는데…….

○委員長 朴尙東; 그것만 除外하면 될 것 아니에요?

○稅政課長 鄭鎭克; 그것을 除外하는 것 自體를 이번에 말씀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內務部長官 許可를 받아서 提出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나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네…….

○稅政課長 鄭鎭克;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地方稅法 9條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가 減免 條例를 만들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이렇게 明文化 되어 있기 때문에 그 違法

行爲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아니,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을 것 같으면 이 條例案을 뭐 하러 여기 議案으로 올렸느냐 이거요. 그럼.....

○稅政課長 鄭鎭克; 許可를 받아서.....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內務部長官하고 해보면 될 것 아니요? 그럼 이것 保留시키죠, 委員長직권으로..... 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條例案을 뭐 하러 여기다 議案으로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內務部長官 承認하면 거기서 承認해서 거기서 다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요.

○財務局長 裴文煥; 아니 委員長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金委員님 말씀하신 그것을 同意를 하는데 이게 우리 稅政課長님께서.....

○委員長 朴尙東; 아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主務課長하고 第4條에 대한 이것은 輕減 條項에 대한 것은 削除를 하도록 양해를 한 것 아닙니까?

金委員님 아까 質疑와 答辯에 대한 것 정리를 한 번 해 보시지요.

○金炯奎 委員; 네, 맞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이 輕減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는 輕減申請이 없는 것이라도 職權으로 輕減할 수 있다 이것을 없애자고 하니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局長님하고 協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削除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稅政課長 鄭鎭克; 아니, 削除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節次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 節次를 이번에 輕減申請을 올린 것이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이 條例文句調整을 위한 것



만 許可를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地方稅法 第9條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가 減免條例를 만들 때는 內務部長官 許可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保留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金炯奎 委員; 여보세요! 제가 警告性 發言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朴尙東; 먼저 質疑終結했는데 그럼 金炯奎 委員이 일단은 이 內容에 대한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議事進行發言을 하십시오.

○金炯奎 委員; 네, 그러지요.

○委員長 朴尙東; 內容處理過程에 理解와 납득이 서로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金炯奎 委員; 지금 稅政課長이 말씀하는 것은 事前에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示達 받은 條例案이지요?

○稅政課長 鄭鎭克;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래서 그렇게 해서 議會의 條例案으로 決定하도록 되어 있지요?

○稅政課長 鄭鎭克;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示達받은 內容에 대해서 字句가 틀려서 條例가 制定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군요?

○稅政課長 鄭鎭克; 지금 그 內容이 아니고요. 저희가 提案한 內容이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提案한 것입니다. 그래서.....

○金炯奎 委員; 許可를 받아서 提案을 했는데 許可받은 內容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서울市 地方議會에서는 조금도 調整할 그러한 權限이 없고, 반드시 內務部

長官 事前에 許可받은 그 事實 그대로 條例가 制定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 稅政課長 생각은?

○稅政課長 鄭鎮克; 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면 內務部長官이 許可한 대로 거기서 施行, 公文하면 되지, 어찌 條例라고 하는 문제를 꼭 거치도록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行政 節次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는 基本的인 趣旨가 輕減을 51%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基本的인 問題가 중요한 것이지. 輕減申請을 안 하는 사람도 區廳長이 챙겨서 輕減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許可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輕減申請을 안한 사람도 區廳長이 챙겨서 輕減을 하겠다고 하는 그 內容으로 內務部長官한테 許可받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市 地方議會에서는 그 許可받은 內容하고 조금도 다르게 條例를 制定할 수 없다,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意味에서 保留性發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地方議會를 한 말로 얘기해서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앞으로 지난 번에 本會議 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서울市廳이라고 하는 地方政府의 參謀로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議會에다 條例를 내든지, 改正案을 내든지 이래야되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절대 이야기할 수 없고 정 그렇다면 이것은 條例 改正案에 대해서 同意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稅政課長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봐요.

○崔明鎭 委員; 제가 補充을 좀 할게요. 그 말씀하신 法 있지요? 內務部長官의 事前承認을 얻어서 條例를 改正하는것, 몇

條 몇 項 그 내용을 한 번 읽어 봐 주시지요. 稅政課長께서 법에 대한 解釋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稅政課長 鄭鎮克; 말씀 올리겠습니다. 地方稅法 第7條 課稅免除등을 위한 條例 第7條 및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 課稅를 하고자 할 때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그 解釋을 잘못하시는 건데 金炯奎 委員이나 우리 朴尙東 委員長께서도 指摘을 해 주신 내용이지만 內容自體가 課稅하느냐, 課稅 안 하느냐, 輕減을 하느냐, 輕減을 안 하느냐, 그런 실질적인 內容은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서 改正할 수 있지만, 義務를 賦課하거나 義務를 輕減시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세세한 內容은 區廳長이 職權으로 알아서 免除申請이 없더라도 免除해 주는 것 이런 改正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의 趣旨를 잘못 解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稅政課長 鄭鎮克; 지금 崔委員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崔明鎭 委員;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의 趣旨를 지금 잘못 解釋하고 계십니다.

○稅政課長 鄭鎮克; 저는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이 서울시.....

○崔明鎭 委員; 法 공부 다시 하셔서 오셔야 되겠어요.

○財務局長 裴文換;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稅政課長의 말씀의 뜻은 稅務課長의 말씀의 뜻은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事務的인 節次로써 稅務公務員이니까 이것이 나중에라도 말하자면 處理에, 節次上의 別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確實히 하기 위해서.....

○委員長 朴尙東; 아니, 局長님! 稅政課長님이 조금도 어떤 職務를 遂行하는 過程에 뭐 職權濫用을 했거나 또는 職務遂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議會에서 저희들이 條例案을 올렸더니 議會에서 區廳長 削減에 대한 것,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申請이 없는 경우라도 職權으로 輕減…….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議會에서 條例案 이 自體는 削除했습니다. 그리고 內務部 承認을 얻으면 될 것 아니요?

처리된 事項을 稅政課長님하고 局長님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削除하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承認얻어서 議會에 올려서 承認을 얻도록 하면 안돼요. 하나도 걸릴게 없는 것이 이것 저희들 條例改正案을 올렸더니 이 第4條에 대한 것은 議會에서 削減을 해서 決議를 해서 通報를 했더라, 그러니까 內務部長官 그렇게 아시오 하고 올리면 內務部長官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하나도 稅政課長이 어떤 職務 執行過程에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추궁당할 게 없어요. 議會인 우리가 責任을 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알기로는 稅政課長께서 金炯奎 委員 質疑에 해도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이 答辯에 대해서 아마 責任의 所持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노파심도 있을 수도 있지요, 公務員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條例改正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內務部長官 承認, 承認. 承認해서 다 承認해 버리면 여기에 附議할 필요가 없어요. 議會에 附議할 필요가 없고 內務部長官에서 그냥, 우린 허수아비가 앉아서 하나의 어떤 걸르는 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손을 댈 데가 있을 때는 손을 대서 이것이 잘됐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괄 通過시킬려는 것 아니요.

제가 오늘 合理的으로, 조금 전에도 停會했을 때 委員들과 協議를 해서 이 문제를 財務局이 提出한 24件 條例案들이 妥當성이 있고 또 지난번 豫算案 審査때나 그 다음에 監查過程을 통해서 볼 때도 상당한 理由가 있으니까 하고 이 問題만 이렇게 하자. 그 조금 전에 바로 가스課長도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스業者의 횡포가 심하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委員들도 後事を 입은 委員들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業者 하나 特定業者 보내서 완전히 獨占事業으로, 하물며 電話하면 여직원 하나도 딱딱하고. 뭐 民願 때문에 가스業者한테 가면 쳐다보지도 안 하고, 콧방귀나 끼고 이러한 狀況에 있다 보니까 改正條例案 自體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稅政課長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되면 잠깐 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해서 5分間만 停會를 합시다.

委員長으로서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5分 會議中止)

(18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財務局에서 附議한 24件 條例案 中에 제가 整理를 하고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8項 多家口住宅에 대한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李聲九 委員이 條例特別整備委員會로 回附를 해서, 廢止를 하더라도 회부를 해서 再檢討를 해서 廢止를 하는 方向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動議案에 再請이 되어서 이 動議案이 채택이 되어서 回附하기로 되었고. 그리고 金炯奎 委員이 質疑하신 都

市가스事業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中에서 但書條項에 "第4條 區廳長이 輕減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는 輕減申請 없는 경우라도 職權으로 輕減할 수 있도록 함" 하는 이 4條를 削除하기로 동의안이 採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主務部處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議事日程 23項에 의안번호 208호인데 이것 賣却權과 또 取得에 관한 것은 異議가 없고, 讓與分에 대한 것은 除外를 시키므로 動議를 해서 再請이 있어서 모두 採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個項을 除外하고는 서울市長이 提出한 모든 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하겠습니다. 여기에 異議가 없으신 委員 여러분,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3個 條例案을 除外하고는 서울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通過가 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私立學校教育用財産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 따른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 및 그遺族의住宅取得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 위한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障人用乘用車에 대한自動車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  
(參照)

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賣買用中古自動車에 대한市稅課稅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太陽熱煖房住宅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戰爭紀念事業會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公共事業遂行時代替取得하는不動産에 대한取得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病院公社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鐵道建設公有持分分割登記에 따른登錄稅課稅免除  
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道路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92市有財産管理計劃一部同意案  
(뒤에 실음)

.....

(參照)

1992定數物品取得同意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는 豫算決算委員會  
의 委員長, 豫決委員님들도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地方  
議會가 構成되어서 오늘이 있기까지 監査, 政策質疑, 豫算豫  
備審議, 그 다음에 豫算審議를 통해서 너무 너무 委員 여러분  
께서 個人事業을 뒤로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財務局에  
서 審査한 이 條例案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檢討해서 通過시  
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財務局長,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우리 시민의 모든 재산과 시민의 편에서 가장 客觀性 있게 여러분께서 우리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성실하게 答辯해 주었습니다. 1次年度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2年度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서 財務局의 所管業務 모든 분야는 우리 市民이 낸 稅와 關係가 있지요. 또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 種 物品購入이나 시민의 財産을 管理하고 계시는 중요한 분야에 계시는 公務員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市民의 豫算을 編成하는 過程에 歲入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92年度를 맞이해서 우리 市의 1,100萬 市民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市政 行政 執行過程에 더더욱 局長님을 중심으로 해서 뚝뚝 뭉치셔서 우리 委員들의 質疑나 또는 모든 資料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께서 성심성의를 다 해서 質疑에 答辯을 해 주시고 모든 자료에 대한 것도 委員들이 요구한 날짜에 언제고 提出해서 우리가 執行 機關이나 議決機關이 渾然一體가 되어서 15개 廣域團體 중에 가장 모범되고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서울特別市議會와 또는 서울시가 되도록 같이 협력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財務局長, 關係公務員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 程度로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18分 散會)

---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枸

孟今龍 金順愛 李秉守 李敏國

俞相根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裴文煥

會計課長 鄭而幹

稅政課長 鄭鎭克

稅務指導課長 李君杓

管財課長 全長河

○其他參席者

가스課長 金致經